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
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2595호

제출년월일 : 2021년 4 월 26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

1. 제안이유

장애인가정에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을 장애의 정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하고,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여 장애인가정의 생활 안정 및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의 정도와 관계없이 장애인가정의 신생아 1명당 5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.(안 제4조제1항)

나. 각 동 주민센터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함.(안 제5조제3항)

다. 출산지원금 신청서 서식에 개인정보·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추가함. (안 별지 서식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-「장애인복지법」제9조

-「건강가정기본법」제8조, 제21조

나. 예산조치 : 2021년 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 예산 6,000천원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1. 3. 11. ~ 2021. 3. 31.) 결과 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 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4) 성별영향 평가서 결과 : 원안동의

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부모의”를 “신생아의 출생 후 부모의”로, “사람에게 지원”을 “사람(이하 “신생아의 보호자”라 한다)에게 지급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없으며 부 또는 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원한다”를 “없다”로 한다.
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장애인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5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제1항 단서 중 “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”를 “신생아의 보호자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”를 “구비서류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③ 각 동 주민센터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.

제6조제1항제2호 중 “관내”를 “서울특별시 양천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장애등급”을 “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”로 한다.

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원기준의 적용례)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출생한 신생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[별지 서식]

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

신청인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		
	전화번호		장애유형	
	대상자와의 관 계			
출생아	성 명		생년월일	
대상자 (※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기재 안 함)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		
	전화번호		장애유형	
지급계좌	금융기관명		예 금 주	
	계좌번호			

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

구비서류	통장사본 1부

개인정보·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제1항 및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: (서명 또는 인)

※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(보호자)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지원대상) ① (생 략)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,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.	**제3조(지원대상)**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 **신생아의 출생 후 부모의** ---------- **사람(이하 "신생아의 보호자"라 한다)에게 지급**----------.
제4조(지원기준 및 지원액)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신생아 1명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1.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: 100만원 2.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: 50만원	**제4조(지원기준 및 지원액)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장애인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.**

현 행	개 정 안
② (생 략) 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부 또는 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원한다.	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 **없다.**
제5조(지원신청)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. 다만,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.	**제5조(지원신청)** ① ----------. ----------**신생아의 보호자가** ----------.
②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(이하 "신청서"라 한다)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동장(이하 "동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 **구비서류**----------.
1.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	**<삭 제>**
2. 통장사본	**<삭 제>**
<신 설>	**③ 각 동 주민센터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**

현 행	개 정 안
	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산 지원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.
제6조(지원절차)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(생 략) 2.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 3.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등급	**제6조(지원절차)** ① -----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----- **서울특별시 양천구** ---------- 3. ---------- **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**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

〔별지 서식〕

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

신청인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		
	전화번호		장애유형 및 등급	
	대상자와의 관 계			
출생아	성 명		출 생 일	
대상자 (※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기재 안 함)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		
	전화번호		장애유형 및 등급	
지급계좌	금융기관명		예 금 주	
	계좌번호			

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

개 정 안

〔별지 서식〕

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

신청인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		
	전화번호		**장애유형**	
	대상자와의 관 계			
출생아	성 명		**생년월일**	
대상자 (※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기재 안 함)	성 명		생년월일	
	주 소			
	전화번호		**장애유형**	
지급계좌	금융기관명		예 금 주	
	계좌번호			

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귀하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
<table>
<tr><td>구비서류</td><td>1.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
2. 통장사본 1부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〈신 설〉</td></tr>
</table>
</td><td>
<table>
<tr><td>구비서류</td><td>통장사본 1부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개인정보·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제1항 및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신청인: (서명 또는 인)
※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(보호자)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.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/table>

【관 계 법 령】

□ 「장애인복지법」

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,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**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**

② 국가와 **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**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□ 「건강가정기본법」

제8조(혼인과 출산) ①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**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·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·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**

제21조(가정에 대한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**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**

1. ~ 3. (생 략)
4. **태아검진 및 출산·양육의 지원**
5. ~ 9. (생 략)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·출산·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·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, 노인단독가정, 장애인가정, 미혼모가정, 공동생활가정,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
⑤ (생 략)